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 휴가제도 관련 현행 법령 적용 간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 군 간부 외출 제도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함

3. 주요내용

가. 간부 ‘분’ 단위 외출 제도 도입(안 제10조제8항)

하사 이상 군인의 연가를 활용한 외출을 “1시간 단위”에서 “1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나. 특수건강진단 공가 제도 신설(안 제11조제1항제7호)

유해작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작업하는 군인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는 경우 공가를 부여하도록 개정

다. ‘1시간’ 단위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 제도 도입(안 제12조제1항)

연간 30일 이내에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한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일’단위 또는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간부 근속휴가 제도 신설(안 제13조제5항)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위로)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하사 이상 군인의 근속연수에 따라 근속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예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중 “1시간”을 “1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휘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사 이상 군인에게 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휴가는 각 호에 해당되는 재직기간 중 각 1회로 한정한다.

1.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 7일 범위
2.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군인 : 5일 범위
3.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군인 : 3일 범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연가 등) ① ~ ⑦ (생 략)	제10조(연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가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에 따른 외출은 <u>1시간</u>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⑧ ----- <u>1분</u> --- ----- -----.	⑧ ----- <u>1분</u> --- ----- -----.	⑧ ----- <u>1분</u> --- ----- -----.	⑧ ----- <u>1분</u> --- ----- -----.
제11조(공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 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다 만, 제3호에 따른 공가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공가) ① ----- ----- ----- -----.	제11조(공가) ① ----- ----- ----- -----.	제11조(공가) ① ----- ----- ----- -----.	제11조(공가) ① ----- -----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 험법」 제52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 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사 이상 군인의 <u>제1호</u> 에 따른 청원휴가는 1시간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누계	제12조(청원휴가) ① ----- ----- ----- ---. ----- <u>제1호 및 제1호의2</u> ----- -----	제12조(청원휴가) ① ----- ----- ----- ---. ----- <u>제1호 및 제1호의2</u> ----- -----	제12조(청원휴가) ① ----- ----- ----- ---. ----- <u>제1호 및 제1호의2</u> ----- -----	제12조(청원휴가) ① ----- ----- ----- ---. ----- <u>제1호 및 제1호의2</u> ----- -----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계산한다. 1. ~ 10. (생략) ② ~ ⑬ (생략) 제13조(특별휴가) ① <u>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에게 7일의 범위에서 위로휴가를 줄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로휴가는 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u> 1. <u>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u> 2. <u>20년 이상 근속한 군인</u> ② ~ ④ (생략) <u><신설></u>	----- --.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⑬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휴가) ① ----- <u>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u> ----- . <u><단서 삭제></u> <u><삭제></u> <u><삭제></u>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u>지휘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사 이상 군인에게 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속휴가는 각 호에 해당되는 재직기간 중 각 1회로 한정한다.</u> 1. <u>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 7일 범위</u> 2. <u>10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군인 : 5일 범위</u> 3. <u>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군인 : 3일 범위</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병영문화혁신담당관	
연 락 처	(02) 748 - 5167